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법 제53조의2 신설) 및 발전용·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제105조의2 개정)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전검토 대상 대형방사선발생장치 범주 설정(안 제82조의2 신설)

- 시설·설비의 방사화 위험도, 시설의 복잡성, 차폐성능 등을 결정하는
범 종류, 에너지 출력 등을 기준으로 대상 명확화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추가(안 별표7 개정)

-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법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항 14의2)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위탁

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확대(안 제154조 제6항 1호)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을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 인근 지역 주민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위탁업무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8-9월), 규제심사(9-10월),
법제처심사(11-12월), 시 행('23년 3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부터 제82조의4까지를 각각 제82조의3부터 제82조의5까지로 하고,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원자의 질량수가 4이하이고,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이하 “핵자”라 한다)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원자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하고 핵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거나, 원자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하고 핵자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면서 빔출력이 5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82조의3(중전의 제82조의2)제1항, 같은 조(중전의 제82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53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5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3조의2제3항”을 “법 제5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82조의4(중전의 제8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2제7항”을 “법 제53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82조의5(중전의 제82조의4)제1항 중 “법 제53조의2제1항”을 “법 제5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법 제53조의2제6항제1호”를 “법 제53조의3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3조의2제6항제2호”를 “법 제53조의3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2제7항”을 “법 제53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154조제6항제1호 중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을 “건강”으로 한다.

별표 7 제7호사목 중 “법 제53조의2제1항”을 “법 제5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111조제1항제14의2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

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별표 12 제2호구목 위반행위란 구목 중 “법 제53조의2제1항”을 “법 제5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누목 위반행위란 누목 중 “법 제53조의2제3항”을 “법 제53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두목 위반행위란 두목 중 “법 제53조의2제4항”을 “법 제53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루목 위반행위란 루목 중 “법 제53조의2제5항”을 “법 제53조의3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무목 위반행위란 무목 중 “법 제53조의2제6항”을 “법 제53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2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u> <u>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u> <u>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u> <u>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u> <u>을 말한다.</u> <u>1. 전자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u> <u>트를 초과하는 경우</u> <u>2. 원자의 질량수가 4이하이고,</u> <u>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u> <u>또는 중성자(이하 “핵자”라 한</u> <u>다)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u> <u>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경우</u> <u>3. 원자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하</u> <u>고 핵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u> <u>자볼트를 초과하거나, 원자의</u> <u>질량수가 4를 초과하고 핵자</u> <u>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u> <u>를 초과하면서 빔출력이 50와</u> <u>트를 초과하는 경우</u>
<u>제82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u> <u>선임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u> <u>고사용자는 법 제53조의2제1항</u> <u>에 따라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u>	<u>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u> <u>선임 등) ① -----</u> <u>----- 법 제53조의3제1항-</u> <u>-----</u>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개시 전

2. 법 제5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

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3조의3제1항 -----

-----.

1. 법 제53조의3제1항 -----

2. 법 제53조의3제1항 -----

3. 법 제53조의3제3항-----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2. 법 제53조의2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
터 30일 이내

2. 법 제53조의3제6항제2호---

③ <u>법 제53조의2제7항</u>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략) ④ (생략)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 ⑤ (생략) ⑥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 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 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 이용이 <u>방사선작업종 사자의 건강</u>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2. (생략) ⑦ (생략)	③ <u>법 제53조의3제7항</u>-----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 ----- <u>건강</u>----- ----- -----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2항 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지정에 관한 안전성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표준설계인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라. 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마. 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과 관련된 안전성 심사

바. 법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법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아. 법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 안전성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제3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나. 법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다.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변경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라. 법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마. 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사.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아. 법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자.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차.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3.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4.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6조제1항(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검사
 -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검사
 - 다. 법 제28조제3항(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검사
- 마.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 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검사
- 사.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에 관한 검사(군사적 목적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에 관한 검사는 제외한다)
- 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선기기에 관한 검사
- 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검사
- 차. 법 제68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한 검사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 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군사적 목적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는 제외한다)
- 타.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작·수입된 운반용기 또는 사용 중인 운반용기 등에 관한 검사
- 파.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 하.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판독업무 등에 관한 검사
5.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제87조의 면허시험의 실시
6. 법 제1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 제82조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7.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조치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5조제

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나.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고 및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중단·폐지 등의 신고

다. 법 제43조(법 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개시 등의 신고

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및 그 변경신고

마.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신고

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신고 및 그 변경신고

사.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및 해임 신고

아.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등록변경신고

자. 법 제71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

차.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독업무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보관·배출·저장·처리·처분·오염제거·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 방어 조치

7의2. 법 제111조제1항제9호의 업무 중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한정한다)의 실시

8.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신청의 접수·심사 및 면허증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나. 법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양도 관련 업무

다. 법 제9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9. 법 제1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11.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1의2. 법 제111조제1항제14의2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
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 외의 방사성
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라. 법 제74조에 따른 운반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마. 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
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물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업무

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다만, 별표 9 제6호가목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아.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외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나. 법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다.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600	1,200	3,000
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조작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6호	600	1,200	3,000
마.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400	800	1,600
바.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사.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아.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400	800	1,600
자. 법 제2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5호	500	1,000	2,000
차. 법 제2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카.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타.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600	1,200	3,000
파.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하. 법 제3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거.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	법 제119조	600	1,200	3,000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항제1호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더.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러.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머.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600	1,200	3,000
버.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400	800	1,600
서.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어.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400	800	1,600
저.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5호	500	1,000	2,000
처.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커. 법 제3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터.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400	800	1,600
퍼.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400	800	1,600
허.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5호	400	800	1,600
고. 법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400	800	1,600
노.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도.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으로 신고한 경우				
로.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500	1,000	2,000
모. 법 제4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보.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00	300	600
소.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200	300	600
오.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조.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초.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코.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토.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200	300	600
포.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00	300	600
호. 법 제5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구.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누.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두. 법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200	300	600
루. 법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200	300	600
무. 법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200	300	600

부.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수.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200	300	600
우.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300	450	900
주. 법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400	800	1,600
추. 법 제6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5호	300	450	900
쿠. 법 제6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투. 법 제6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300	450	900
푸.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후.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그. 법 제6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느.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300	450	900
드.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300	450	900
르.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므.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브.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스.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으.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고한 경우				
즈.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300	450	900
츠.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크. 법 제7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300	450	900
트. 법 제7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200	300	600
프.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300	450	900
흐. 법 제7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300	450	900
기. 법 제7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니.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300	450	900
디.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리. 법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미.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300	450	900
비. 법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00	300	600
시.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이.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0	300	600
지. 법 제9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400	800	1,600
치. 법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300	450	900
키. 법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200	300	600
티. 법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200	300	600

피. 법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200	300	600
--	-----------------	-----	-----	-----